● 제296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폐회중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#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# 검 토 보 고 서

2020. 9. 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**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**

의안번호 1754

# Ⅰ. 동의안 개요

## 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 출 일 : 2020. 8. 12.

다. 회 부 일 : 2020. 8. 21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 및 긴급 일시보호(쉼터)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,

○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(1) 시설 개요

○ 소 재 지 : (상담센터) 종로구 종로38 서울글로벌센터 4층

(쉼터) 성북구 ※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생활가정 임대

○ 시설규모 : (상담센터) 60.19㎡, (쉼터) 137.26㎡

○ 주요시설 : (상담센터) 사무실, 상담실2, 창고

(쉼터) 총 2개호 / 각 호별(68.63㎡) - 방3, 거실, 주방, 화장실

○ 인력운영 : 12명(센터장 1, 회계·행정1, 센터 상담원 6, 쉼터 상담원 4)

※ 운영시간 : 평일 9~18시 / 상시 상담언어 : 6개(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몽골어, 베트남어, 필리핀어)

(2) 주요위탁 내용

○ 위탁기간 : 3년(2021. 1. 1.~ 2023.12.31.)

○ 위탁업무

-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관리·운영 및 사업일체
  · 전문상담(전화/온라인/대면/현장방문) 및 의료·법률·심리 지원 서비스 등 위기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생활지원에 필요한 사업
- 센터 산하 '한울타리 쉼터' 관리·운영 및 긴급보호서비스 제공
  · 의식주 생활서비스, 이용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
○ 소요예산 : 691,706천원('21년도)

- 인건비 487,506천원, 사업비 165,981천원, 운영비 등 38,219천원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※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0.7.8.)

(3)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

○ 폭력피해 등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와 연계한 긴급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업무로서,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
다. 참고사항

(1) 관계법령

○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」제7조

**제7조(지원의 범위)**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8.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5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
○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」제20조

**제20조(업무의 위탁)**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(2) 예산조치 : 2021년 민간위탁 예산편성

(3)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(4) 기　　타 :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
(외국인다문화담당관-7174, 2020.6.16.)

## 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

○ 본 동의안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의 관리·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함)[1]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[2]을 추진하고자,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
○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관리·운영 및 사업일체

·전문상담(전화/온라인/대면/현장방문) 및 의료·법률·심리지

---

1) **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**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**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**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**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 <개정 2019. 3. 28.>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
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9. 3. 28.>

2) **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 **"재위탁"**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**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**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원 서비스 등 위기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생활지원에 필요한 사업

- 센터 산하 '한울타리 쉼터' 관리·운영 및 긴급보호서비스 제공
  · 의식주 생활서비스, 이용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
○ 2013년 9월 개소 이후 센터는 부부갈등, 위기상황 등에 처해있는 서울시 거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를 맞은 이주여성과 동반가족이 입소 가능한 긴급보호시설(한울타리쉼터)을 운영하고 있음.

<센터 기본 현황>

| 구분 |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| 한울타리쉼터<br>(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생활가정 임대) |
|---|---|---|
| 소재지 | 서울글로벌센터 4층(종로구) | 성북구 소재 |
| 규모 | 60.19㎡(사무실, 상담실2, 창고) | 137,26㎡(68.63㎡×2개호) |
| 운영 등 | 주 5일, 9~18시 | 연중무휴, 24시간<br>(정원 10~15명) |
| 내용 | 전문상담서비스 의료·법률지원 연계 등 | 동반아동 포함, 긴급보호 서비스(의식주 등) |

○ 센터의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.

# <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>

(단위 : 명)

| 구분 | 총 계 | 센터장 | 행정 및 회계 | 상담원 | 쉼터상담원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인원 | 12 | 1 | 1 | 6 | 4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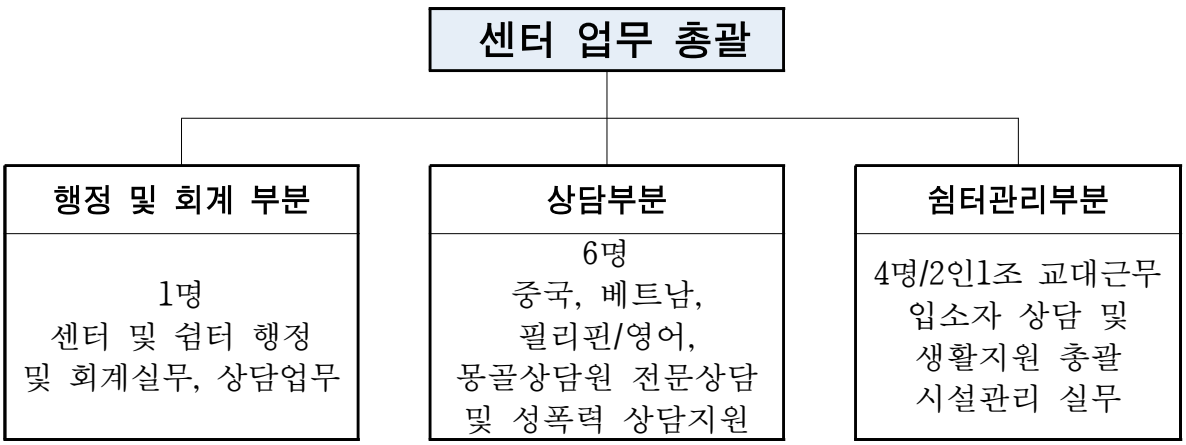


| 사업명 | 수행기간 | 금액 (단위:백만원) | 사업개요(핵심사업 내용) |
|---|---|---|---|
|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자립지원 (S-Oil Happy Together 캠페인) | 2013.05. ~현재 | 2018 70<br>2019 70<br>2020 50 | - 쉼터 퇴소 이주여성 자립 물품 구입 지원<br>- 쉼터 입소 이주여성 통역 인력 지원 |
| 사각지대 이주 배경 아동 연계지원 (라이프오브더칠드런 외국이주민 지원 사업) | 2016.01. ~현재 | 2018 11.7<br>2019 12<br>2020 12 | - 사각지대 이주여성과 아동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비, 자립비, 프로그램 참가비 등을 지원 |
| 사각지대 이주 배경 아동 양육하는 이주여성 지원사업 (대명복지재단) | 2016.09. ~2018.12.31. | 2.5 | - 사각지대 이주 배경 아동 양육을 위한 생활비 지원<br>- 캄보디아 통·번역 상담 활동가 인건비 지원 |
| 이주여성의 눈으로 보는 이주여성지원기관모니터링단 교육 (아산복지재단) | 2017.07. ~2018.06. | 30 | - 이주여성 모니터링 교육<br>- 이주여성 지원기관의 프로그램 및 활동 점검 |
| 이주민 커뮤니티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 "다양해서 더 멋진 이주민 커뮤니티" (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) | 2018.02.01. ~2018.12.31. | 20 | - 이주민 커뮤니티 발굴조사<br>- 이주민 활동가 및 커뮤니티 리더 간담회<br>- 이주민 커뮤니티 교육 및 지원<br>- 이주민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환대와 연대 한마당 |
| 이주분야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(한국여성재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) | 2018.02.01. ~2018.11.16. | 25 | -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간담회<br>-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인권지원<br>- 이주민을 위한 다국어 성·인권 노트 제작 및 배포<br>- 이주여성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<br>- 이주분야 성폭력 사례발굴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|
| 이주여성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(2018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) | 2018.04.01. ~2018.11.30. | 20 | - 이주여성 인권지원단 양성을 통해 이주여성 역량강화<br>- 사각지대 이주여성 인권보호서비스 제공<br>- 한국사회 성·인종차별 인식개선 |
| 짧은여행, 긴 호흡 (2018년 한국여성재단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) | 2018.05.01. ~2018.10.30. | 55 | - 캄보디아 문화/언어 교육<br>- 활동가 캄보디아 현장 방문<br>- <짧은 여행, 긴 호흡> 최종 보고회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이주여성들의 #Me_Too :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Up (2018년 한국여성재단 #Me_Too 지원사업) | 2018.12. ~2019.06. | 75 | - 이주여성 성폭력피해 사례발굴 및 지원<br>- 이주분야 성폭력 예방을 위한 '성·인권 노트' 활용 확대<br>- 이주분야 성폭력사건 사례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전국이주여성워크숍 |
|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본국 귀환사례 발굴 및 지원사업<br>(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) | 2019.03.01. ~2019.12.31. | 20 | - 전국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귀환사례 발굴<br>- 귀환한 결혼이주여성 및 관련 기관 현지조사<br>- 귀환이주여성 사례보고 및 발표회<br>- 전국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귀환사례 지원 |
| 그래! 이제는 성평등 : 이주여성 인권지원단 양성 및 성평등 인식 전환사업 (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프로젝트) | 2019.03.29. ~2019.10.18. | 25 | - 이주여성을 위한 성평등 워크숍을 통해 성평등 매뉴얼에 대한 내용 이해 및 전달<br>- 이주여성 인권지원단을 통한 사각지대 이주여성 인권보호 서비스 제공<br>- 한국사회의 성·인종차별 인식개선 |
|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 (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인권상황 실태조사) | 2019.04.01.~ 2019.10.04. | 50 | -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 조사<br>- 국제 인권법 및 국내외 법제의 검토<br>-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제시 |
|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및 자녀소통 증진사업 (2019년 한국여성재단 다문화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) | 2019.04.01.~ 2019.11.30. | 20 | - 한부모 이주여성 사례발굴 및 지원<br>-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<br>- 한부모 이주여성과 자녀관계 증진 교육 |
| 다문화가족 소수언어 통번역 서비스 사업 (2019 서울시 다문화가족 보조사업) | 2019.04.15.~ 2019.12.31. | 40 | - 이주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인권지원단 교육<br>- 소수언어 이주여성 인권지원단을 통한 사각지대 이주여성 인권지원 통번역 서비스 제공<br>-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소수언어로 제작된 웹자료를 통해 사각지대 이주여성에게 정보제공 |

## <민간위탁 추진 현황>

| 회차 | 위탁기간 | 선정방식 | 위탁기관 |
|---|---|---|---|
| 1<br>(최초) | '15.1.1.~'17.12.31.(3년) | 신규위탁<br>(공모) | (사)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|
| 2 | '18.1.1.~'20.12.31.(3년) | 재계약 | (사)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|

○ 한편 2020년 제2차 종합성과평과에서 같은 시기 평가를 받은 전체 22개 사무의 평균 80.3점에 비해 센터의 전문성 및 다국어 통·번역 지원단 배치의 적극적인 환경변화 적응 노력 등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86.4점을 기록하였으나, 장애인 접근성이나 SNS연계 필요성 등이 개선요청사항으로 나타났음[3].

<2020년 종합성과평과 주요내용>

| | |
|---|---|
| **주요성과** | ▸ 다국어 통·번역 지원단 배치하여 이주여성의 국적 다양화라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노력<br>▸ 전 직원 대상 전문보수교육, 상담원 워크숍, 시사정보 교육 등을 통해 직원 전문성 강화 도모<br>▸ 연차별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추진 사업별 목표 명확화 및 사업 실행에 따른 평가,<br>환류 대책 수립하여 적정한 사업 계획 추진 |
| **개선과제** | ▸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적정 업무 공간 모색하여 수혜자 만족도 제고 필요<br>▸ 통합포털 사이트를 통해 센터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식 채널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 필요 |

##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○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 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.

○ 「지방자치법」[4]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

3) 서울특별시(2020.7.9), "2020년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",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정보소통광장 사전정보공표.

4) **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③ **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**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**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**

원 조례」제7조제1항제8호[5] 및 같은조례 [6]에 따라 시장의 명의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시장의 사무라 할 것임.

○ 또한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제20조제1항[7] 및 「민간위탁조례」제4조[8]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"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"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
- 이주여성 전문상담과 지원체계를 통한 인권보호와 다문화가족 사회안전망 구축과 긴급일시보호시설 운영(한울타리 쉼터)을 통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완화하는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---

5) **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제7조(지원의 범위)**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3. 28., 2019. 9. 26.>
8.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
6) **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)**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·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7) **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제20조(업무의 위탁)**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8) **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② 삭제

## 3 종합 검토 의견

○ 동 위탁 사무는 낯선 이국에서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에게 그들이 처한 각종 어려움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전문 심리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대피처(쉼터)를 제공하여 긴급 보호하는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.

○ 그러므로,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